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101029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5. 12. 12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김재철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3.04.12.자 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5. 7. 17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심명보	202호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주택임 차권자	2021.10.31	264,000,000		2021.10.29	2021.09.30		
<비고>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"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임차권등기(2023.11.10.등기) 있음(임대차보증금 264,000,000원), 전입일 2021.10.29. 확정일자 2021.9.30.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"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101029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158-3

벨라리치

에이동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의왕시 새터말길 42

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5층

공동주택(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)

1층 16.8㎡

2층 123.87㎡

3층 123.87㎡

4층 123.87㎡

5층 123.87㎡

옥탑1층 16.8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2층202호

철근콘크리트구조 54.45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158-3

대 605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605분의 43.19

감정평가액

325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

2026.01.13

325,000,000

32,500,000

2회

2026.02.10

260,000,000

26,000,000

3회

2026.03.17

208,000,000

20,800,000

4회

2026.04.21

166,400,000

16,640,000